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152
----------	------

제출년월일 : 2011. 8.16.
제출자 : 안산시장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0.12.29) 사항을 반영하여 적재량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한 용어 규정 신설(안 제2조)
- 나.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함(안 제3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1. 7. 7. ~ 7. 26.(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전문)
- 안산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각각 “제1호, 제2호”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교통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이 만 균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동차관리계장 김 재 경
	담당자 성명·전화	우호원 (행정 2969)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정의는.....</p> <p>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②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p> <p>③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뜻은.....</p> <p>1.</p> <p>2.</p> <p>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p> <p>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p>
<p>제3조(차고지 설치의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허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p>	<p>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